

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1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-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

2. 주 요 골 자

-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임대주택 면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개정

3. 참 고 사 항

- 도 세 정 13400-10402 (2001. 02. 15)

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제3호 중 “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”를 “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”로 한다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3. <u>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</u>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3으로 한다.	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